

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』를 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로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(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」를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)
-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 및 위치 (안 제3조)
 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
 -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
-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 (안 제4조)
-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(안 제5조)
 -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-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

○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內 도서관 운영(안 제13조 ~ 15조)

- 도서열람대출 (안 제13조)
- 도서망실, 훼손 등 배상책임(안 제14조),
- 기증도서 관리(안 제15조)

○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감액 규정 (안 제16조 ~ 제17조)

○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근로자복지기본법」
- 「노동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-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기존 운영중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과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

-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계를 분명하게 하였고
근로자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
센터 및 회관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근로복지
증진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
가능토록 하였으며
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내 도서실 설치에 따른 도서열람 대출관리
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므로
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